

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재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4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0.

발 의 자 : 김재원 · 김준형 · 황운하
최혁진 · 신장식 · 용혜인
박은정 · 강경숙 · 임오경
손 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유연근무, 재택근무, 위케이션(workation) 등 새로운 근무형태가 확산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.

또한 여가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, 창의적 콘텐츠 개발과 관광·문화 산업과 연계되어 국가경제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, 특히 여가산업 관련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의 육성은 여가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동력임에도 현행법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.

이에 국민이 새로운 근무형태를 통해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

마련하고 여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, 청년기업, 여성 기업의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가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국민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여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신설).

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유연근무, 재택근무, 워케이션(휴가지에서 일도 하고 휴식도 취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) 등 새로운 근무형태를 활용하여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산업 관련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의 육성, 여가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일과 여가의 조화) ①·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5조(일과 여가의 조화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 민이 유연근무, 재택근무, 워케 이션(휴가지에서 일도 하고 휴 식도 취하는 근무형태를 말한 다) 등 새로운 근무형태를 활 용하여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.</u>
제17조(여가산업의 육성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7조(여가산업의 육성) ① (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<u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 가산업 관련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의 육성, 여가산업 종 사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